

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은평3 권순선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7호
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대상사무가 민간위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추진절차 등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서울시교육청은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관련 규

정이 없어 시의회에 동의는 물론 보고 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.

이에 교육감 사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서울특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이 건의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